CUK비전혁신원 소속 기관동아리 '학생혁신서포터즈' 회칙

2024.08.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명칭은 『학생혁신서포터즈(이하 '본 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가톨릭대학교 교육혁신에 관한 재학생들의 의견수렴, 교육혁신 아이디어 도출 및 우수성과 공유·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는 가톨릭대학교 CUK비전혁신원 내에 둔다.

<제2장 단원 및 단장>

제4조【단원의 자격】
(1) 가톨릭대학교 학생으로서 본 회의 소속된 자를 단원으로 한다.
(2) 제명·탈퇴 등으로 본 회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단원 자격을 잃는다.

제5조【단원의 의무】
(1) 단원은 회칙을 준수한다.
(2) 단원은 회의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3) 단원은 단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탈퇴를 희망하는 단원은 탈퇴 최소 2주 전 단장에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및 권한】
1. 회의를 주관한다.
2. 부서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한다.
3. 전반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지시, 이행한다.

제7조【책임】
제5조와 제6조의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내부 협의를 통해 제명되거나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다. (상세 사항 *제3장* 참조)

<제3장 회의>

제8조【정기회의】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첫 번째 회의 후부터 매주 진행하며, 학기 중 최소 8회 이상 개최한다.
2. 방학 중에는 최소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제9조【참석자의 의무】

(1) 의무

1. 참석자는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야 한다.
2. 참석자는 개회 전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회의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
3. 참석자는 회의 불참 시 제10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제10조【참석자의 결석】

(1) 참석자는 정기회의 결석 시 개회 12시간 전까지 결석 사유를 임원에게 보낸다.

1. 개회 12시간 전까지 결석 사유를 보낸 참석자만 무단결석이 아닌 '일반 결석'으로 인정한다.
2. 한 학기 정기회의 전체 회차의 $\frac{1}{2}$이상 일반 결석 시 본 회에서 제명한다.

(2) 정기회의에 2회 이상 무단결석한 자는 본회에서 제명된다.

<제4장 회칙개정>

제11조【개정안 발의】

회칙 개정안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단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

(2) 지도교수와 임원 내부 협의로 발의